

의안번호	2213511
의 퇴 인	김현정의원
회 답 일	2025.10.16.
추계번호	25D55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0조(급식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지원하여야 함(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함(제2항)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함(제3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70조(급식지원)	개정안은 급식지원의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급식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2. 상세 사유

- 6개 보훈관계법 개정안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유공자, 그 유족 등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급식 제공의 의무화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1) 6개 보훈관계법 개정안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의안번호 제2213509호)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의안번호 제2213510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의안번호 제2213511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제2213515호)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제2213517호)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제2213518호)

-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2025년 8월말 기준 개정안에 따른 보훈대상자 본인과 그 유가족은 다음과 같음

[표 1] 6개 보훈관계법 개정안에 따른 급식지원 보훈대상자 현황: 2025.8.기준
(단위: 명)

구분	본인	유가족			합계
		수권유족	비수권유가족	소계	
독립유공자	4	9,015	82,636	91,651	91,655
국가유공자	158,993	274,768	1,185,546	1,460,314	1,619,307
보훈보상대상자	6,363	2518	21,043	23,561	29,924
참전유공자	102,009	-	-	-	102,009
5·18민주유공자	3,376	1,112	12,420	13,532	16,908
특수임무유공자	1,313	1,141	5,461	6,602	7,915
합계	272,058	288,554	1,307,106	1,595,660	1,867,718

주: 1) 상기의 인원은 고엽제후유의증, 장기복무제대군인, 경상이자는 제외된 것임

2) 상기의 인원은 대상구분별 중복인원이 제외된 실인원임

자료: 국가보훈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급식지원의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 그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급식지원 대상인원, 급식지원 방법, 급식지원 적정 단가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사항을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아동복지법」 제35조제2항²⁾과 「노인복지법」 제4조³⁾는 결식아동급식과 결식노인급식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급식제공의 대상·방법·단가는 아래와 같음

2) 「아동복지법」

제35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결식아동급식: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기타(2024년 기준 272,400명) / 시설
급식·일반음식점·도시락배달 등 / 1식 9,500원 이상(아동급식
카드 기준) 【참고자료1】
- 결식노인급식: 결식 우려 노인 / 경로당급식·도시락배달 / 1식 약 4,000원
(지자체별 상이) 【참고자료2】
-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전체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을 급식지원 대상
으로 보고 있으나, 이 중 상당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순증인원을 합리적으로 예측
하기 곤란함
- 또한, 시설급식·도시락배달·급식바우처 제공 등 급식지원의 방법에 따라
그 단가가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급식지원의 방법과 단가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 따라서 현시점에서 급식지원의 대상인원, 방법, 단가 등을 추정할 정보가
없어, 6개 보훈관계법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 참고로, 정부가 제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2026년
보훈회관 또는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보훈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보훈대상자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보훈단체 복지지원” 시범사업(지자체
경상보조)을 계획하고 있음 【참고자료3】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assembly.go.kr

참고자료1

결식아동 급식지원 개요 (자료: 보건복지부)

- (추진근거) 「아동복지법」 제35조제2항 및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국가와 지자체에 결식예방 및 영양 개선사항 지원 의무 부과
 - '05년 지방이양으로 지원기준·방법·절차 등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
 - * 보건복지부는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 매뉴얼」을 통해 급식단가 등 권고
- (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 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총 272천명('24년)

구분	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24년	272,400	164,143(60.2%)	14,069(5.2%)	94,188(34.6%)
'23년	277,394	164,509(59.3%)	14,323(5.2%)	98,562(35.5%)
'22년	283,858	165,698(58.4%)	15,328(5.4%)	102,832(36.2%)

* 한부모, 긴급복지, 중위소득 52% 이하, 지역아동센터·복지관 이용 등

- (지원기준) ('25년) 1식 9,500원 이상 지원 권고('24년 1식 9,000원)
- (시행주체) 교육청과 지자체 재원 분담·지원

구 분	학기 중				방학중(연중)
	평일		토·공휴일		
	조·석식	중식	조·석식	중식	조·중·석식
기관명	지자체	교육청	지자체	교육청	지자체

* 아동이 원하는 급식지원 유형(조·중·석식)을 선택하나, 평균 1일 1~2식 제공

**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은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지자체가 제공

- (전달체계) 개인 신청, 지역사회 발굴·추천(읍·면·동, 시·군·구 등) → 대상자 접수·자격기준 조회·결정(시·군·구) → 지원방법에 따라 급식 제공
- (급식제공유형)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일반음식점(아동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기타 그 밖의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방법(부식 지원, 식품권 등)
 - (아동급식카드 사용방식) 1회 사용 한도 15,000원 ~ 최대 40,000원, 한달 분씩 충전하며 급식가맹점에서 사용, 잔액은 이월 가능, 신용카드사와 제휴 (15개 시도)

참고자료2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개요 (자료: 보건복지부)

□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구분	경로식당 무료급식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급식 대상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55~59세의 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 노인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55~59세의 자 등
급식 기관	경로식당(일일평균이용자 수 20인 이상, 주 3회 이상 급식/지역여건 고려시 이용자 20인 이상[읍·면지역 10인 이상], 주1회 이상 급식 가능)	밥, 국, 밑반찬, 죽 등 가정식·치료식(당뇨병, 고혈압) 등 제공
비용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차상위계층 노인 무료, 그 외 실비	

□ 2024년도 지역별 급식 단가 현황(기준: 2024.5.31. 기준 / 단위: 원)

구분	경로식당 무료급식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서울특별시	4,000~5,500	4,000~6,000
부산광역시	3,500~4,000	3,500~4,000
대구광역시	3,500	2,300~14,500
인천광역시	3,500	3,500
광주광역시	4,000	4,000
대전광역시	4,000	4,000
울산광역시	3,500	4,000~5,500
세종특별자치시	미운영	5,000
경기도	4,000	4,000~8,000
강원특별자치도	3,000~6,000	3,500~11,000
충청북도	3,500~5,000	2,500~9,500
충청남도	3,500~5,000	3,500~20,000
전북특별자치도	4,000~4,500	5,000~6,000
전라남도	5,500	5,500
경상북도	4,000	4,000
경상남도	3,300	2,500~15,000
제주특별자치도	5,500	5,500

* 도시락 단가는 지역별로 1일분 또는 3~5일분을 제공하거나 단백질 음료 등을 추가로 제공, 배달료 지원 등 구성이 다양하여 단가의 범위가 넓음

□ 사업개요

- 국가유공자 자긍심 고취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보훈회관 복지지원을 경로당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
- 보훈회관,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보훈문화 프로그램에 참여시 참여자를 대상으로 점심 지원

□ 사업방식 : 지자체 경상보조

- (사업방식) 지자체가 운영하는 보훈문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식사비 지원
 - * 연 인원 729천명 전망 (1회당 시,구 단위 80명, 군 단위 40명)
 - ** 지자체의 내실있는 프로그램 설계, 보훈대상자 참석 유도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비 지자체 지원 (110개 단체, 6백만원)
- (비용분담) 신청 지자체 매칭(50:50), 자부담 1천원* 적용
 - * 현재 보훈회관에서도 2~3천원 자부담 중

□ 예산소요 +1,789백만원

- 年 3,578백만원 (국비 50% 1,789, 지방비 50% 1,789백만원)
 - (점심지원) 국비 점심 1회 2천원 × 年 729천명 = 1,459백만원
 - (프로그램) 국비 年 3백만원 × 110 = 330백만원

< 보훈회관 점심·여가 지원 상세내역 >

1. 식대단가 : **5천원** (자부담 1, 국비 2, 지방비 2)
2. 지원인원 : **110개 단체**, 시·구 80개(日 80명). 군 30개(日 40명)
3. 지원일수 : 행사일정 고려 주 **2회·월 8회, 12개월**
4. 프로그램 운영비 : 지자체 참여 유도 등을 고려 프로그램 운영비 **6백만원**